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90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박해철 · 임미애 · 김정호

이광희 · 송옥주 · 김태선

박 정・전재수・전용기

김남희 • 진성준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 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 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

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 「근로기준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 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성노동자

10.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노동자 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단체"를 각각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 근로자"를 "고용노동자"로, "근로자가 근로를"을 "노동자가 노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기준근로시간"을 각각 "기준노동시간"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준근로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연장노동과 야간노동"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근로자</u> "란 사업주에게 고용	4 <u>노동자</u>
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	
는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 ① ~ ③ (생 략)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	4
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6. 여성근로자</u>	<u>6. 여성노동자</u>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7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의 <u>근로자</u>	<u>노동자</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u>일용근로자</u> , <u>단시간근로자</u> ,	9. 일용노동자-단시간노동자
기간을 정하여 <u>근로계약</u> 을 체	<u>노동계약</u>
결한 <u>근로자</u> , 일시적 사업에	<u>노동자</u>
고용된 <u>근로자</u>	<u>노동자</u>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10.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한 법률」에 따른 파견노동자

11. (생략)

⑤ ~ ⑧ (생 략)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 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11.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u>노동자단체</u>
② <u>노동자</u>
<u>노동자노</u>
<u>동자</u>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노동자단체</u>---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 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 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 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 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 여야 하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수립) ① (생략)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주가 <u>근로자</u>를 위하여 5. -----노동자-----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6. 노동자단체-----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

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 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사업주단체 및 <u>근로자단</u> 첸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 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저

- ① (생 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 <u>자단체</u> 등 관련 기관·단체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 저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_
7. ~ 11. (현행과 같음)
(3)
<u>노동자단</u>
체
<u>.</u>
· ④ (현행과 같음)
세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자
단체
③·④ (현행과 같음)
세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

받으려는 <u>근로자</u>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 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u>고용</u> <u>근로자</u>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 련에 대하여는 그 <u>근로자가</u> 근 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 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다.

노농자
· ② (현행과 같음)
(3)
고용노
 동자
노동자가 노동
<u></u> 으
<u>4</u>
법노동시간-
<u>기준노동시간</u>
<u>노동</u>
<u>자기준노</u>
동시간
⑤ <u>기준노동시간</u>
연장노동과 야간노동

제17조(<u>근로자</u> 의 자율적 직업능	제17조(<u>노동자</u> 의 자율적 직업능
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	력개발 지원) ①
관은 재직 중인 <u>근로자</u> 의 자율	<u>노동자</u>
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u>근로자</u> 에게 다음 각 호	<u>노동자</u>
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2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u>근로자</u> 를	<u>노동자</u>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u>근로</u>	<u>노동</u>
<u>자</u>	<u> 가</u>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	2
호에 따른 <u>근로자</u> 중 대통령	<u>노동자</u>
령으로 정하는 <u>근로자</u>	<u>노동자</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생 략)	인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	

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u>근로자</u>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u>근로자</u>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경우
- 5. ~ 9. (생략)
- ③ ~ ⑤ (생 략)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 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 대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u>,</u>
1. • 2. (현행과 같음)
3
<u>노동자</u>
4
<u>노동자</u>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u>노동자단체</u>

융자할 수 있다.

- 1. <u>근로자</u> 직업능력개발훈련(위 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2. <u>근로자</u>를 대상으로 하는 자 격검정사업
-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 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 7. (생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 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 주에게 고용된 <u>근로자</u>를 대상 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2. (생략)
- 3. <u>「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u>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u>.</u>
1. 노동자
2. 노동자
3
노동자
4 ~ 7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②
4. ~ 7. (현행과 같음)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u>근로</u> <u>자</u>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 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u>근로자</u>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 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말한다)

- 4. 유급휴가(<u>「근로기준법」</u>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 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5. ~ 7. (생략)
- ③ (생 략)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 저 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 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 <u>자단체</u>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6. (생 략)

<u>노동자</u>
<u>노동자</u>
4「노동기준법」
5. ~ 7.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세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①
사업 시원/ ①
<u>노동</u>
자단체
<u>.</u>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23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제12조·제20 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 · 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 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 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 자재의 설치 ·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 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 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 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	·음)
제23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u>노동자</u>	
 ② (현행과 같	. •)
제28조(지정직업	•
/	·····································
	•

다만, 소속 <u>근로자</u>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 런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1. (생 략)
 - 2. <u>근로자</u>의 직업능력개발을 위 한 조사·연구사업
 - 3. (생략)
 - ② ~ ⑤ (생 략)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의 능력개발) ① (생 략)

<u>노동자</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노동자</u>
1. (현행과 같음) 2. <u>노동자</u> 3.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 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야 한다.
- 1. 2. (생략)
-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 제1항제1호의 <u>근로자</u>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 에 한정한다)
- ③ ④ (생 략)
-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 저 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

②
1.・2. (현행과 같음)
3
<u>노동자</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시[35호(기 6 대략의 '클럽/ ①
<u>노동자</u>
<u> 0 / 1</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
· 유영) ①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
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시합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u>노동자</u>
②
1.・2. (현행과 같음)
3. <u>노동자</u>
4.·5. (현행과 같음)